

# 「평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

## 일부개정규칙안」

### 심사보고서

#### 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4년 11월 20일, 이창열 의원 발의
- 회부일자: 2024년 11월 25일 회부
- 상정일자: 제30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 
(2024년 12월 5일 상정 · 의결)

##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이창열 의원)

##### 가. 제안이유

- 「평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」 제2조와 「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3조와 상충 되는 부분을 수정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.

##### 나. 주요내용

- 「평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」과 「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」와 상충 되는 조항 수정(안 제2조 관련)
  - 7명의 위원  $\Rightarrow$  6명의 위원
-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용어 정비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영옥)

※ 검토보고서 전문 ..... [붙임 1]

### 4. 질의 및 답변 요지: 「생략」

### 5. 토론 요지: 「없음」

### 6. 심사 결과: 「원안가결」

### 7. 소수의견 요지: 「없음」

### 8. 기타 사항: 「없음」

붙임 1. 평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검토보고서 1부.

2. 평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.

# 「평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

## 일부개정규칙안」

### 검토보고서

#### 1. 조례안 개요

- 제안자 : 이창열 의원
- 제안일자 : 2024. 11. 20.
- 회부일자 : 2024. 11. 25.
- 상정일자 : 2024. 12. 5.

#### 2. 제안이유

- 「평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」 제2조와 「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3조와 상충 되는 부분을 수정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.

#### 3. 주요내용

- 「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」와 상충 되는 조항 수정(안 제2조 관련)
-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용어 정비

## 4. 검토의견

- 본 규칙 개정안은 「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」와 상충 되는 조항을 수정하여 조례와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이고, 용어를 정비하여 군민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주요 내용으로는,「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원 수를 “7명”에서 “6명”으로 수정하였고, 띄어쓰기 등 맞춤법 및 한자 표현을 정비하였음.
- 검토결과,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# 5. 참고자료: 관계법령

### □ 지방자치법

**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
  - 가.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·위치 및 구역의 조정
  - 나. 조례·규칙의 제정·개정·폐지 및 그 운영·관리

### □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

**제3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 각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**6명 이하**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# 평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

## 일부개정규칙안

(이창열 의원)

의안 번호	365
----------	-----

발의 연월일: 2024년 11월 20일

발의자 이창열 의원

찬성자 박춘희, 심현정, 이은미 의원

### 1. 제안이유

「평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」 제2조와 「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3조와 상충 되는 부분을 수정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가. 「평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」과 「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」와 상충 되는 조항 수정(안 제2조 관련)

- 7명의 위원  $\Rightarrow$  6명의 위원

나.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용어 정비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 : 붙임 참조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
다. 입법예고 : 없음

## 평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안

평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「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2조제3항”을 “「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2조제3항”으로, “7명”을 “6명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한다.

제4조제4항제4호 중 “밖의”를 “밖에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구성) 평창군의회 윤리특별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<u>「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」</u>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	제2조(구성) ----- ----- -- <u>「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」</u> 제2조제3항----- ---- 6명----- --.
제3조(기능) ① (생 략) ② 위원회는 제1항에 <u>의한</u> 심사를 한 후 의결로써 해당 의원에게 위반사실을 알릴 수 있다.	제3조(기능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따른</u> ----- ----- -----.
제4조(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· 운영) ① ~ ③ (생 략)  ④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. 1. ~ 3. (생 략) 4. 그 <u>밖의</u>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·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	제4조(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· 운영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 <u>밖에</u> ----- ----- -----

## 【관계법령】

### < 지방자치법 >

**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려하지 아니하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

    가.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·위치 및 구역의 조정

    나. 조례·규칙의 제정·개정·폐지 및 그 운영·관리

### <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>

**제2조(설치)**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

**제3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 각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**6명 이하**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# **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**

## **1. 비용발생 요인**

없음.

## **2. 미첨부 근거 규정**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 중 제2호

## **3. 미첨부 사유**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## **4. 작성자**

작성자	평창군의회 이창열 의원
연락처	(033) 330 - 2504